

[] 계량기 제조업
[] 계량기 수리업
[] 계량증명업
[] 자체수리자
[] 계량기 수입업

등록(지정·신고)사항 변경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7일
신청인	업체명	성명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
	사업장 주소	사업장 전화번호	사업장 팩스번호
	공장 주소	공장 전화번호	공장 팩스번호
변경사항 및 사유	변경된 사항	등록사항 변경일 년 월 일	
	변경사유		

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4항·제8조제4항·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·제9조제2항·제11조제2항에 따라 ([] 계량기 제조업, [] 계량기 수리업, [] 계량증명업, [] 자체수리자, [] 수입업)의 등록(지정·신고)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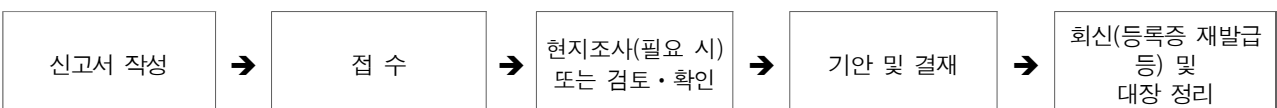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
·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	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고인

처리기관: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계량업무 담당부서)

비고: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4항, 제8조제4항,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변경 등록·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·지정·신고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.